

연안지역 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

이주아* · 이훈**

*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, ** 신한대학교 도시기반학과 조교수

Policy Implication for Landscape Administration of Coastal Areas

Jooah Lee* · Hoon Lee**

*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& Technology, ** Shinhan University

핵심용어 : 연안지역, 경관관리, 해양정책, 지역특성, 관리수단

Key Words : Coastal Area, Landscape Administration, Marine Policy, Regional Characteristics, Means for Administration

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/04

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

- ▶ 연안의 항만도로변 일부지역 난개발 → 해안 도시미관 훼손
 - 경기도 내 유일한 항만인 평택항이 조성됨에 따라 항만도로변 일부지역에서 난개발에 의한 도시미관 훼손이 나타나고 있음
 - 공유수면 매립지역 및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(지역/지구/구역 등) 수립방안 등의 필요성 제기

연구의 목적

- ▶ 연안지역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항만도로 인접지역 등 경관 보존방안 수립
 - 항만을 포함한 연안지역 해안도시의 이미지 제고 기여
 - 공유수면 매립지역 등 연안 내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항만도로변 및 주변지역 요구기능 도출
 - 연안지역 경관보존을 위한 건축물 높이 및 형태 등 관리방안 검토
 -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·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제안

02 연구의 주요내용 02/04

기존 법·제도 적용가능성 검토

- ▶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활용
 -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계획관리 지역의 개발을 억제할 수 없음
- ▶ 용도지역의 지정 관리
 -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제한 사항은 연적규모 제한은 있지만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도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실정으로, 난개발 억제가 어려움
- ▶ 항만시설 보호지구 지정
 -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의 용도지구인 시설보호지구(학교시설, 공공시설, 항만시설, 공형시설)의 하위 위계의 용도지구
 -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에서의 허용용도가 광범위하지만 난개발의 온상인 주택개발, 공장, 음식점 건축 등은 불가능하므로 난개발 양상은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함
 - 단, 난개발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공공용지 비율이 낮고 사유지의 비율이 높을 경우 지구지정 시 주민 반발이 예상됨

03 사례 검토: 평택항 항만도로변 03/04

※ 자료: 평택항 항만도로변 관리방안 보고서(2013.11) 중 일부 발췌

2. 항만도로 도시관리 기본구상(안)

03. 환경기초개선

- 환경 주변부 개선, 기부공용 광장 조성 등으로 선형화
- 주민 생활편의 계획 및 편의 유도

04 결 언 04/04

※ 해양정책 진로와 해안 발전 전략 세미나 자료(현영국, 2011.11) 참조

해양정책 중심의 해안발전 방향 검토와 이의 실현을 위한 법·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
- ▶ 지역개발, 해안의 관광휴양 및 마리나 산업의 연계 필요
 - 현재 항만 물류, 관광 휴양, 해안지역 발전 등은 개별적으로 추진
- ▶ 연안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안지역 발전 추진 필요
 - 현재는 '육지' 관점에서의 해안지역 발전 추진
 - : 육지 내 시설 중심의 관광개발,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해안특성 고려가 미흡
- ▶ 해안의 가치 유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관리수단 마련 필요
 - 연안지역의 경관관리가 지역발전 및 미래 국토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
 - : 개발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으로 유사한 개발 패턴 → 지역별, 연안별 특색 없는 모습 연출

* First Author : jalee@kiost.ac.kr

** Corresponding Author : hlee@shinhan.ac.kr